

서식 III-67 가족돌봄 휴직원

휴 직 원

금번 시부 홍길동의 돌봄으로 인하여 20**년 **월 **일부터 20**년 **월
 **일까지(개월간) 휴직하고자 증빙서를 붙여 제출하오니 허가하여
 주시기 바랍니다.

돌봄 필요성	대상 가족이 어떤 돌봄을 필요로 하는지 기재 / 배우자 부모 포함
휴직 필요성	돌봄과 업무를 병행할 수 없는 사유를 기재 - 조부모, 손자녀 돌봄 사유 : 조부모에 대해서는 조부모의 직계비속이 없거나 다른 직계비속이 돌볼 수 없는 경우, 손자녀에 대해서는 손자녀의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없거나 다른 직계존속 및 형제자매가 돌볼 수 없는 경우 등 본인이 돌봐야 하는 시유를 기재 (근거:「공무원임용령」 제57조의8)
돌봄 계획	(오전) 돌봄 휴직 중 대상 가족을 어떻게 돌볼 계획인지를 구체적으로 기재 (원래의 근무시간을 어떻게 돌봄에 사용할 것인지 기술) (오후)

<휴직 관련 안내 사항>

1. 교육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합니다.
2. 휴직 중 매 반기별(6월30일, 12월 31일)로 소재지, 연락처, 휴직사유의 계속 여부를 휴직자 실태 보고서에
 기재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해야 합니다.
3. 가족돌봄휴직 중 휴직 사유에 위배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
 - 예) 돌봄대상자 미동반 해외 체류, 돌봄대상자의 직장 재직, 미허가 겸직 업무, 영리업무 등
4. 휴직기간 만료 및 휴직 사유 소멸(돌봄대상자 사망 등) 시 즉시 복직해야 하고, 복직 시 원소속교로 복직되지
 않을 수 있습니다.

20**년 **월 **

소 속 : ○○학교

직위(교과) : (초)중등학교 교사(○○)

성 명 : ○○○ (인)

○○학교장 귀하